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동의안 제출 및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9일

나.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제출 및 회부일자 : 2001년 2월 2일

3. 요구 이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◦ 위탁관리 사무

가. 재산의 관리

나. 시설사용료 부과 · 징수

다.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 · 훈련

라.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제반사무

○ 위탁관리 재산

가. 토지 : 17필 45,011m² (13,616평)

나. 건물 : 11동 2,560.28m² (774평)

다. 시설 : 7종

라. 장비 : 88품목 (216종)

○ 위탁관리 기간 : 3년

○ 위탁관리의 해지

가.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

나.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

○ 시설 및 장비의 관리

가. 시설물의 수선, 기자재의 보수 등 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

나.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운영일체를 수탁자가 부담

○ 보조금 지원

가. 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

나. 연간 ○○○원을 보조금으로 지원

○ 보조금의 사용

가. 자연학습원의 운영·관리의 목적이외의 사용 금지

나.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처리방법 준용 및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

○ 사업계획서

수탁관리자는 매년 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

○ 인력 관리

- 가. 승계받은 인력에 대하여는 승계일 현재 보수수준 이상 유지
- 나. 본인의사에 반한 부당한 처우 또는 해고 금지

○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

- 가. 위탁사무 수행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관리자의 책임
- 나. 위탁재산이 훼손·망실·오손되었을 경우 손해 배상
- 다.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

○ 지도 감독

- 가. 도지사는 학습원의 서무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
- 나. 년1회이상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 실시

○ 명의 사용

- 가. 대외적 명의는 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」으로 표기
- 나. 수탁관리자의 명의를 병행표기 가능

○ 협약의 보증

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조금은 연간 총보증금의 20%로 하고, 총보조금이 연간 1억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
- 동의요구안의 내용중 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간과 보조금액을 사전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한 바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